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2018.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회의개요〉

□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일정 : '18. 5. 24.(목) ~ 5. 28.(월) (심의기간 : 5일)
- 제출방법 : 규제 심사의결서 표기·스캔 후 전자우편 송부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2명**(외부9명 , 내부3명)
 - 외부(9명) : 김용직 위원장, 한선미 위원, 황동언 위원, 김성삼 위원, 강을영 위원, 공순구 위원, 이대영 위원, 오형나 위원, 김형영 위원
 - 내부(3명) : 윤준병 행정1부시장, 김용복 기획조정실장, 이영기 정책기획관

○ 안 건

- 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 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 심의결과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심의결과	참고사항
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1건	원안의결	※ '수정의결' 의견 있음. (p4 참조)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3건	전부 원안의결	※ '수정의결' 의견 있음. (p5, 6 참조) ※ '부결' 의견 있음. (p7 참조)

목 차

- I.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3
- II.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4

I**안건 §1 자치법규 규제사항 심의**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이하 이 절에서 ‘제정안’이라 함)

심의요청부서 : 도시재생본부(재생협력과)

심의결과(총 1건)

○ 규제 : 제정안 제5조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 총 12명 의견제출, 11명 ‘원안의결’ 의견, 1명 ‘수정의결’ 의견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수정의결’ 의견 이유 아래 참조

- 규제사항

제 정 안

제5조(후보자 기준) ①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원 자격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조합의 임원
7. 선정대상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계약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등 협력업체 임·직원

- 위원 1명의 '수정의결' 의견

-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5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는데 제정안 제5조 제2항 5호는 “법을 위반하여”로 되어 있어 그 범위가 확장되어 형평에 반하므로 “이 법을 위반하여”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II

안건 §2 자치법규 규제사항 심의

심의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고시」 제정고시안(이하 이 절에서 ‘제정안’이라 함)

심의요청부서 :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

심의결과(총 3건)

○ 규제1 : 제정안 중 ‘대상차량’ 부분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 총 12명 의견제출, 9명 ‘원안의결’ 의견, 2명 ‘수정의결’ 의견, 1명 ‘부결’ 의견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수정의결’, ‘부결’ 각 의견 이유 및 ‘보충의결’ 아래 참조.

- 규제사항

제 정 안

4. 운행제한 개요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05.12.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 ①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제 정 안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한시적 적용 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 ※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 2. 28.까지 위 “① 적용제외(저공해조치)”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 위원 1명의 ‘수정의결’ 의견 I

- 한시적 적용 보류 기간을 2019. 2. 28.까지로 한 것은 대상차량이 생계형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이 짧아 불충분하다고 생각됨.

- 위원 1명의 ‘수정의결’ 의견 II

- 한시적 운행제한과 함께 친환경 차량 대체와 관련된 금융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위원 1명의 ‘보충의견’

- 대상차량을 노후한 경유차량으로 제한하면서도 장애인 차량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날에만 한정하여 그 운영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 고시는 적절하다고 생각됨.

- 위원 1명의 ‘부결’ 의견 : 아래 참조(p7)

○ 규제2 : 제정안 중 ‘시행일자’, ‘시행기간’, ‘시행시간’ 부분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 총 12명 의견제출, 10명 ‘원안의결’ 의견, 1명 ‘수정의결’ 의견, 1명 ‘부결’ 의견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수정의결’, ‘부결’ 각 의견 이유 아래 참조

- 규제사항

제 정 안

3. 시행일자 : 2018. 6. 1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시행시간 : 06:00 ~ 21:00

- 위원 1명의 '수정의결' 의견

-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적용보류 기간을 조금 더 연장 또는 저소득층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설치 보조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위원 1명의 '부결' 의견 : 아래 참조(p7)

○ 규제3 : 제정안 중 '시행지역' 부분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 총 12명 의견제출, 11명 '원안의결' 의견, 1명 '부결' 의견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 '부결' 의견 이유 아래 참조

- 규제사항

제 정 안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시행시간 : 06:00 ~ 21:00

- 위원 1명의 '부결' 의견 : 아래 참조(p7)

□ 위원 1명의 ‘부결’ 의견 이유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상을 확대적용 (2.5톤 미만)하는 취지는 공감함. 규제대상인 공해차량 운행주의 상당수가 영세자영업자임을 고려할 때 규제 시행 전 다소의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지원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원방안을 강화 후 운행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
 - 2.5톤 미만 공해차량에 대해서 2019.2.28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만으로는 운행주가 준비가 미흡하여 자력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2.5톤 미만 공해차량에도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선행된 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37개의 차량 단속지점 중 대부분이 서울시로 진입하는 지방차량에 대한 단속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시 내부의 통행차량은 적발될 가능성이 낮아서(시내 3~4개 단속지점) 규제를 통한 단속 실효성이 부족함.
- 본 ‘제정안’은 현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이른 상황에서 기존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나, 한해 10여회 해당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대상으로 피해 집단의 지원과 미흡한 단속 체계의 보완 없이 긴급하게 시행할 실효성이 부족하여 규제시행의 긴급함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음.